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3. 25 선고 2019가단5148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 주식회사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3. 2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,493,150원 및 그 중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7. 8.부터 2020. 1. 6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각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김현주

별지